

- 약관명 :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약정서(판매기업용) (5-06-0203)
- 시행예정일: 2023.04.18. (예정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-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(용어의 정의) ~ 제7조 (약정의 해지 등) <생략></p> <p>제8조(정보제공 동의)</p> <p><u>본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해당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u></p> <p><u>1. B2B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 및 자금결제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은행이 MP에게 제공</u></p> <p><u>가. 본인의 구매자금대출한도 및 대출잔액, 연체정보등</u></p> <p><u>나.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본인에 관한 '연체 등' 정보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등)</u></p> <p><u>2.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(구매기업중심)를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의 기업 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정보 및 판매대금추심의뢰내역 등을 구매기업에 제공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용어의 정의) ~ 제7조 (약정의 해지 등) <좌동></p> <p>제8조(정보제공 동의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본인은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및 구매기업에게 다음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u></p> <p><u>1. MP에게는 판매기업에 대한 기업명(또는 상호명)정보, 약정 정보,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</u></p> <p><u>2. 구매기업에게는 판매기업에 대한 기업명(또는 상호명) 정보, 약정 정보,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</u></p>	<p>문구 정비</p>

제9조(손실부담 및 면책) ~ 제 12조(기타 특약사항) <생략>

제9조(손실부담 및 면책) ~ 제 12조(기타 특약사항) <좌동>